

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
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고 서

【이순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8. 2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87호로 2024년 8월 12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협력체계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
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마.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
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4. 8. 19. ~ 8. 23.)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에 따라 관내 사업장의 위험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목적과 관련 용어를 규정.
- 안 제3조와 제4조는 동 조례의 지원 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조치 규정.
- 안 제6조는 협력체계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.
-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구체화하여 규정.
- 안 제9조는 영등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방법 규정.
- 안 제10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통한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는 2021. 5. 18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일부 개정된 사항을 위임받은 사항으로, 영등포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를 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, 관련 교육,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.
-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¹⁾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,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'22년(874명) 대비 감소(△62명)했고, 사고사망만인율²⁾도 0.39‰으로 전년 대비 감소(△0.04‰p)했다. 이는 '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.4~0.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.3‰대에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음.



- 이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개정 후,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, 홍보 및 교육 등으로 안전 문화 의식 내재화와 경각심 제고가 어우러진 성과라 볼 수 있음.

1)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'승인일 기준'으로 집계한 통계

2) 인구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, (사고사망자 수 /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) X 10,000

- 따라서,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, 해당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임.

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

자치구	조례명
1	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2	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3	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4	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5	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6	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7	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8	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9	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10	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11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12	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13	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14	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15	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16	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17	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18	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19	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20	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21	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
참고 자료

1

산업안전보건법

제4조(정부의 책무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0. 5. 26.>

1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
2.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
3.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
4.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
5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·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
6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시설의 설치·운영
7.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·관리
8.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
9.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·증진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5. 18.]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5. 18.]